

- 서울특별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639
------------	-----

2019년 6월 14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5월 16일, 정진철 의원 외 9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4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9년 6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진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신부를 배려하고 임신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-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,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표인 「임산부 자동차 표지」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사용을 막고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9. 5. 29 ~ 2019. 6. 5

-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: 보류

- 부당 사용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고, 자동차 표지 부당

사용 점검 및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

- 자동차 표지에 등록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, 자동차 표지 후면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(유효기간 경과 후 폐기, 타인 대여 및 양도 불가 등)을 명시하여 자동차 표지 발급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임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포인 「임산부 자동차 표지」의 양도 및 대여를 막고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표지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과 함께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“서울시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투자출연기관 및 그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”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¹⁾를 제정·운영하고 있음
- 다만, 그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세부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안내표지와 같은 세부 시설에 대한 규격 및 설치기준이 미흡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²⁾
- 이와 관련하여,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임을 알리는 「임산부 자동차 표지」를 발급·운영하고 있으나, 주차표지의 발급, 회수 등의 관리가 어렵고 초기 임산부의 경우

1)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3일, 김선갑 의원 외 11명 발의

- 심사결과 / 공포일자 : 2017년 12월 20일(본회의 가결) / 2018년 1월 4일

- 주요내용 :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,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, 위반차량 조치 등

2)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 계획(2019.6.3.)

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더욱
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
※ 참고 : 자치구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(2018년 기준)

자치구명	계	동대문구	성북구	강북구	노원구	구로구	서초구	금천구	광진구
발급건수	1,461	302	208	37	78	750	86	-	-
출산인구	17,892	1,919	2,310	1,418	2,911	2,714	3,011	1,351	2,258

※ 금천구 조례 제정 후 미시행, 광진구 '19. 시행(50건 발급)

- 따라서,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부당한 사용을 막고 적발시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주차구역 이용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
- 한편, 임산부 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·유도하도록 하는 법령이 발의³⁾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산부주차구역 정책의 실효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
- 따라서, 임산부 주차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당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

3)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 5일, 박주민 의원 외 12 명 발의
- 진행단계 : 위원회 심사(2017.11.20.) 소위원회부
- 주요내용 :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,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, 위반차량 조치 등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